



제 428회 국회 (임시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설립 근거 명시 등 >

■ 황정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399호)

2025. 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설립 근거 명시 등	3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황정아의원 등 20인

나. 발의연월일 : 2025. 2. 25.

다. 회부연월일 : 2025. 2. 2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통신(ICT) 분야는 세계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AI, 양자 등 글로벌 기술패권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필수 산업 기반 기술로 부상하였음.

현행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연구개발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관리 전문기관을 설립하거나 법인·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의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평가·관리 업무는 한국연구재단(NRF)의 부설기관인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에서 수행하고 있음.

국내의 국가연구개발 연구관리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 중 부설기관 형태로 운영되는 전문기관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유일하고, ICT분야의 파급력과 IITP가 매년 국가 R&D예산 1조원이 넘는 사업을 관리하는 전문기관임을 고려할 때, 현행법 상 기관설립 및 업무위탁과 관련한 법률적 근거가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개발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담
기관인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을 설립하도록 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정보
통신기획평가원을 한국연구재단의 부설기관에서 개별 법인인 정보통
신기획평가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신설 및 제42조 등).

Ⅲ. 검토의견

1.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설립 근거 명시 등

가. 개정안 요지

- 정보통신융합등¹⁾ 기술·서비스 관련 연구개발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전담기관 설립 및 법인·단체로의 위탁·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을 삭제하고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을 설립함(안 제32조 및 제32조의2).
-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임직원 및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형법」상 뇌물에 관한 죄의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의제함(안 제42조).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2조(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개발 등의 지원) ①·②(생략) ③ <u>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인 전담기관을 설립하거나 법인·단체에 위탁</u>	제32조(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개발 등의 지원) ①·②(현행과 같음) <u><삭 제></u>

1)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기본원칙)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융합(이하 “정보통신융합등”이라 한다) 기술·서비스 등의 진흥 및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u>·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u>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전담기관의 운영 및 제2항 각 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신 설></u>	④ ----- ----- -----제32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기획평가원----- ----- ----- -----. <u><삭 제></u> 제32조의2(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설립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2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하 “기획평가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현행	개정안
제4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및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② 기획평가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기획평가원은 제1항에 따른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획평가원의 설립·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⑤ 기획평가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 ----- ----- ----- ----- --.

현행	개정안
1. ~ 7. (생략) 8. 제32조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설립하거나 위탁·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	1. ~ 7. (현행과 같음) 8. 기획평가원
9. · 10. (생략)	9. · 10. (현행과 같음)

다. 검토사항

- 현행법 제32조제3항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의 개발(이하 “ICT R&D”라 함)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²⁾의 추진을 위해 법인인 전담기관을 설립하거나 법인·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2)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개발 등의 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른 산업 및 서비스 등에 정보통신의 접목을 통하여 생산성과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관련 연구개발 사업
 2. 제1호에 따라 추진되는 과제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3. 국가·지방자치단체, 대학·정부출연연구기관, 민간 등이 보유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의 거래 등 기술이전을 위한 중개·알선 지원
 4.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에 대한 평가 및 평가 기법의 개발·보급
 5.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의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통계조사·연구 등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제공
 6.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의 기술이전 후 상용화 연구개발 지원
 7.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의 기술사업화 전문인력 양성
 8.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의 기술거래·사업화 촉진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활용
 9. 지식재산권 등 정보통신융합등 기술 관련 연구성과물의 관리·홍보·활용
 10.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의 수준조사 등 정책연구 사업
 11.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관련 시범사업
 12.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인 전담기관을 설립하거나 법인·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1999년 정보통신연구진흥원(독립법인)으로 설립된 후, 2009년 정부조직 개편으로 기능을 분산·이관하였다가, 2014년 ICT R&D 관리기능 재통합 방침에 따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등 기존 5개 기관³⁾에 분산된 ICT R&D 관리기능을 NIPA의 부설기관으로 설립한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로 통합하였음.
- 이후 “연구관리 전문기관 운영 효율화 방안(2018. 8.)”에 따라 기관명을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에서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으로 변경(2018. 12.)하고, 한국연구재단(NRF)의 부설기관으로 이동을 완료(2019. 1.)하였음.
- 즉, ICT분야의 R&D 전문기관은 법정 독립법인 형식으로 설립·운영(1999~2009년)하였으나, NIPA 부설기관의 형식을 거쳐 다수의 전문기관 운영체제에 따른 R&D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해 ‘1부처 1전문기관’ 원칙(2018년)에 근거하여 IITP를 NRF로 통합(2019년)하였음.
- 개정안은 국내의 국가연구개발 연구관리 전문기관 중 부설기관 형태로 운영되는 전문기관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유일하고, IITP가 매년 1조원이 넘는 국가 R&D예산 사업을 관리하는 전문기관임을 고려할 때, IITP의 설립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독립법인화하려는 것임.

3)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

○ 현행법 제32조제3항에서는 ICT R&D 전담기관을 설립하거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전담기관을 특정하지 않았음.

- 현재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한국연구재단의 부설기관으로 「한국연구재단 정관(한국연구재단규정)」 제18조의34)에 따라 ICT R&D 전담기관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4년 연구관리 전문기관 지정·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분석 결과(안)」(2024. 12.)에 따르면, 2023년도 정부R&D 전문기관은 17개이고,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관리 사업수 기준 3위, 관리예산 기준 5위 규모의 기관임.

< 2023년도 R&D 전문기관 관리 사업수 및 관리예산 현황 >

(단위: 개, 억원)

기관명	설립 근거	2023년	
		사업수	예산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법	218	67,359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연구재단 정관 제18조의3	105	14,225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조	142	30,918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	38	16,534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16조	105	5,829

4) 「한국연구재단 정관」

제3조(사무소 소재지) 재단의 주 사무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둔다. 다만,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곳에 부설기관, 분사무소, 국외사무소, 지원시설 등을 둘 수 있다.

제18조의3(정보통신기획평가원 등) ① 재단은 제3조에 따라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제3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부설기관으로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하 "기획평가원")을 둔다.

②~⑥ 생략

기관명	설립 근거	2023년	
		사업수	예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74	6,950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3조	99	5,417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	19	2,101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37	2,983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기상산업진흥법 제17조	8	267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	14	1,301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원자력안전법 제7조의2	7	497
한국임업진흥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	12	528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에너지법 제13조	82	10,369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5	1,625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민법 제32조	15	1,511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	64	14,698
합 계		1,044	183,112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그런데 R&D 전문기관 중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을 제외한 모든 기관은 독립법인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대부분 법률에서 R&D 전담기관으로 해당 기관을 특정하고 있음⁵⁾.
- 따라서 개정안은 ①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2025년도 관리예산 총 1조 5,843억원, 정원 360명인 대규모 R&D 전문기관인 점, ② 범정부 차원의 R&D 전담기관에 대한 효율화 방안, ③ ICT

5)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은 법률에 특정되지 않음.

R&D 사업관리 측면에서 독립법인화할 필요성, ④ 독립법인화하는 경우에도 민법상 사법인 형태로 할지 개정안과 같은 개별법에 근거를 둔 특별법인으로 할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이와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등 글로벌 기술패권 주도권 확보를 위한 IITP 역할의 중요성 강화 등을 배경으로 하는 개정안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범부처 R&D 전문기관 정책 방향의 전환 검토라는 큰 틀의 변화와 양자(量子) 등 주요 기술 분야의 유기적 연계라는 통합의 당초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 ‘신중 검토’ 의견을 제출하였음.

○ 한편 기획재정부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하였음.

-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연구관리 전문기관 운영 효율화 방안 (2018. 8. 2.)⁶⁾”에 따라 연구재단의 부설기관으로 통합 운영 중이고, 이는 부처내 기관 간 유기적 연계 및 연구 관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2019년에 통합했음을 감안할 때, 현재의 운영 방식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임.
- 또한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부설임에도 이미 예·결산, 조직·인사 등 기관 운영을 독립적으로 수행⁷⁾ 중이므로 독립 법인화의 실익이 부족하고, R&D 성과 제고를 위해 전문기관 간 협업

6) 부처별 다수의 전문기관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비효율(상이한 규정·절차·시스템 등) 개선을 위해 ‘1부처 1전문기관’ 원칙 하에 기관을 일원화함.

7) 이사회와 경영평가는 한국연구재단과 통합하여 수행

활성화가 중요한 시점에 독립 법인화는 이러한 정책 기조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임.

○ 또한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하였음.

- IITP를 부설기관 형태로 지속할 시 기관경영평가에서 AI·ICT R&D성과는 기초과학R&D(NRF) 성과의 일부분으로 포함되어 평가를 받기 때문에 AI·ICT 분야 R&D의 책임성을 담보하기 곤란하고,

AI·ICT R&D는 다양한 분야에 소형 과제를 분산 지원하여 잠재성을 발굴하는 기초과학분야(NRF)와는 R&D 기획 특성이 다른데도, NRF 거버넌스에 포함되어 있어 전략성 저하 우려된다는 입장임.

- 따라서 국가적 AI·ICT 기술 경쟁력 확보와 AI 대전환과 기술 사업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법정 법인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228